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 보험』 보장범위

◆ 보장범위

1) 자연재난재해 사망

①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에 의거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② 일사병 및 열사병 포함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급성감염병 사망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

①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감염병은 제외

※ **감염병의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 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 되는 것을 말함

3)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①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산사태** :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①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가.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5) 강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①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따름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구청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 기계 중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7) 청소년유괴·납치·인질 발생보장 지원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발생금을 지급
- ② 억류상태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함
- ③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미지급함

8) 물놀이사고 사망

- ①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사망 및 익사를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 ※ **물놀이**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9) 익사사고사망 비용지원 (장례비용지원)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장례비용을 지급 (장지비용 제외)

※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함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참조

10) 가스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①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가스의 누출사고

나.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11) 화상수술비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심재성2도이상)